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57947		
등록번호	160111-0415326		
상 호	란드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RaND Biosciences Inc.)	2017.03.24 변경	2017.04.07 등기
본 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비동 5층 501-비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	.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680,857 주	금 1,340,428,500 원	.
보통주식	1,454,500 주		.
상환전환우선주식	1,226,357 주		.
목 적			
1. 바이오 신약을 포함하는 의약품, 진단 기술, 기타 의료 기술 등 헬스케어 전반의 신기술 연구개발, 가공, 생산, 판매 및 기술 평가 및 중개업 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규찬 500515-*****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12일 등기	
사내이사 이재호 500626-*****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12일 등기	
감사 박필환 530104-*****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김규찬 5005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80, 310동 1204호(장항동, 호수마을)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김규찬 5005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60, 1412동 903호(운중동, 산운마을)	2019년 11월 08일 주소변경	2020년 01월 17일 등기
사내이사 유용창 671115-*****	2016년 03월 29일 취임	2016년 04월 12일 등기	
	2019년 03월 28일 중임	2019년 04월 0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오세웅 780224-*****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7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26분23초

등기번호	057947
------	--------

기타비상무이사 진광현 641016-*****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12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1. 상환전환우선주식(1,226,357주)
 (1) 상환가액
 상환가액은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 상환방법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한 상환
 (4)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전환조건
 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1주로 한다.
 (6) 단,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을 경우 보통주식의 수는 변경될 수 있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1,226,357주
 (8)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만 10년동안 전환청구할 수 있다.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 직원
 2) 관계법령에 의거해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 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제 2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

등기번호	057947
------	--------

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여 한다.

- 1)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 2) 주식의 권면액
- 3) 기타 회사가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행사가격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그 최저 행사 가격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 로 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교부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 또는 교부된 것으로 본다.

회사성립연월일 2015 년 12 월 22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20년 01월 0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304호(전민동, 이노비즈파크)으로 부터 본점이전
 2020 년 01 월 20 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열 램 용